

공 고 문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23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고된 금지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금지물품을 제공하신 분은 기한 내에 금지물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 9. 11.

방송통신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 다 음 -

- 물 품 명 : 순금 행운의 열쇠(37.5g)
- 제공장소 : 신고인의 연구실
- 신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금지물품을 책상에 놓고 감
- 제공일시 : 2013. 9. 2. 경
- 공고기간 : 2013. 9. 11. ~ 10. 10.
- 보관기간 : 2013. 10. 11. ~ 2014. 1. 10.
- 담당자 연락처 : 운영지원담당관실 조근실 주무관
(02-2110-1316, gscho@kcc.go.kr)
- 참고사항 : 보관기간 이내 청구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매각하여 국고로 귀속할 예정임